

【 6 】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5. 9.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31일부터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동 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역할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2조)
-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3조)
- 마. 각 실무협의체의 간사, 직원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 라. 위원장의 직무·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하여 정함 (안 제5조 내지 제6조)
- 바. 회의·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8조 내지 제9조)
- 사. 의결사항의 처리·의견의 청취·공청회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1조 내지13조)
- 아.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4조)
- 자. 기타 조례안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함 (안 제15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산업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실무협의체)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체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붙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 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 본조신설 2003. 7. 30, 시행일 2005. 7. 31】